

#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13-78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3. 10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.

## 2. 주요내용

○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교환 1건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교환
  -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를 위한 교환

## 3. 사업별 주요내용

1)	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를 위한 교환
----	----------------------

### (1) 사업의 필요성

국·공유재산이 상호 점유되어 있는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함에 따라 야기되었던 관리소홀 및 재산 활용상의 제약, 변상금 부과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.

### (2) 추진근거

-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-2217(2012.08.07)호 및 -3574(2012.12.28)호

- 서울시 자산관리과-108(2013.01.03)호 및 -5444(2013.05.02)호
- 재무과 -13539(2012.08.24)호 및 -15645(2013.09.17)호

### (3) 추진경위

- 2011년~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등 상호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시·도간 MOU 체결
- 2012.03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점유 재산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- 2012.05 : 조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상호점유해소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실시
- 2012.09 : 기획재정부에 교환대상 국·공유재산 현황 최종선정 제출
- 2013.05 : 국·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대상 확정 통보
- 2013.06 : 상호점유재산 교환관련 협의  
 ⇒ 공유재산 및 물품관계법 시행령 제27조 의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

#### ○ 교환대상 재산 현황

소유	지번	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공시지가(원)	가액(원)
계	3필지		374		2,256,600,000
마포구	마포구 대흥동 298-4 (대흥2파출소)	대지	66	5,080,000	335,280,000
	마포구 도화동 6-69 (도화파출소)	대지	194	8,370,000	1,623,780,000
	마포구 신수동 297 (신수파출소)	대지	114	2,610,000	297,540,000
계	2필지		765.1		2,256,394,000
기획재정부	마포구 성산동 145-18 (성산어린이집)	임야	625.9	2,860,000	1,790,074,000
	마포구 합정동 369-12 (환경미화원휴게실)	대지	139.2	3,350,000	466,320,000

(5) 법적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(교환)
- 국유재산법 제54조(교환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

□ 위치도 및 현황사진

주소	위치도	현황사진
<p>마포구 대흥동 298-4 (대흥2파출소)</p>		
<p>마포구 도화동 6-69 (도화파출소)</p>		
<p>마포구 신수동 297 (신수파출소)</p>		
<p>마포구 성산동 145-18 (성산어린이집)</p>		
<p>마포구 합정동 369-12 (환경미화원휴게실)</p>		

[별지 제11호 서식]

#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년도관리계획총괄표 (11-1)

( 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 )

구	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			2	765.1	2,256,394	2	765.1	2,256,394	
	1. 매 입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			2	765.1	2,256,394	2	765.1	2,256,394	
	3. 기타 취득										
처 분	계				3	374	2,256,600	3	374	2,256,600	
	4. 매 각										
	5. 양 여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			3	374	2,256,600	3	374	2,256,600	

## 2013년 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 (11-3)

( 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 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	교환대상 수량	추정가액	교환 시기	교 환 사 유	교환 대상자	비 고
	구 분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 수량						
1 건	처분	대	대흥동 298-4	66	66	335,280	2013.11월 예정	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	기획재정부	
		대	도화동 6-69	194	194	1,623,780				
		대	신수동 297	114	114	297,540				
	취득	임	성산동 145-18	625.9	625.9	1,790,074			마포구	
		대	합정동 369-12	139.2	139.2	466,320				
계	토 지	처분	대흥동298-4 외 2필지	374	374	2,256,600				
		취득	성산동145-1 8 외 1필지	765.1	765.1	2,256,394				

- 주) (1) 구분 :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.
- (2) 교환대상수량 :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,000m<sup>2</sup>이고, 교환대상토지가 2,000m<sup>2</sup>이면 “일단의 수량”란에는 5,000, “교환대상수량”란에는 2,000을 기재한다.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.
- (3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